

# 2016년도 북하면 종합감사 결과

## 1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6. 10. 11.(화) ~ 10. 14.(금), 4일간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4명
- 감사대상 : 2013. 11. 16. ~ 2016. 10. 10.

## 2 | 감사결과

구 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건/천원)				비 고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계	26	8	18	15/1,706	14/1,702.5	1/3.5	-	
원 처 분	14	5	9	14/1,702.5	14/1,702.5	-	-	훈계 2 주의 2
현지처분	12	3	9	1/3.5	-	1/3.5	-	

※ 회수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관리 부적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정산업무 소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 추진 소홀

※ 추징 :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 부과 부적정

## 3 | 지적사항

### 원 처 분

#### 1.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2014. 2.~3. 북하면 ●◎★◇◎ 전기료 및 하수도사용료 3건 145천원 집행
- 2014. 4. ◇◆●◎●◎★ 추진 물품 구입비 등 11건 4,783천원에 대해 집행품의서와 지출결의서 상 통계목 상이, 통계목과 불일치 등

##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시정)

- 2013.11.~2014. 8.까지 ◆◎ 및 ●◎★◆◆□회원 자녀 결혼 축의금 등 3건 200천원 집행
- 2015. 3.~2016. 2.까지 추석(설)맞이 직원노고 격려 물품(●◎◆◆) 4건 1,869천원 집행 등

## 3.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관리 부적정(시정)

- ◆◆□농협 및 ◎★우체국에 11개 계좌개설
  - 세입세출외현금, 지출원, 법인카드 결제계좌 등 5개 계좌는 정상적으로 사용
  - 휴면계좌 등 사용하지 않는 계좌 6계좌 해지하고 잔액 570원 반납

## 4.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처리 부적정(주의)

- 2014. 2. 18. 북하면 ◆□리 ○○번지(田, 182㎡) 광주 거주 ◎★◆으로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따라 결과 보고서 작성
  - 2014.2.19. “동일번지 내 주택존치”, “원상복구 불가능” 토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불가 회신
  - 2014.2.19. 농지담당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에 따라 신청인은 2014. 3. 7. 토지대장에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 5. 개발행위허가 불법행위 단속 소홀(시정)

- 북하면 ●◎리 ○○번지 ○○ 외 11건

## 6.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정산업무 소홀(시정)

- 2013 생활편익사업 □◆진입로 정비사업 등 7건

## 7.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소홀(주의)

-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시 신청자의 적격여부 심사와 농지의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하나, 2014~2016년 현재까지 625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하면서 자격의 농업에 이용할지의 여부, 농업경영계획서 첨부 여부, 기존 농업인 여부 등의 항목에 대한 검토만을 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 8.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사용폐지신고 처리 소홀(주의)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시 첨부서류 확인 소홀

-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의 서류 미첨부 : 10건

## 9.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업무 추진 미흡(시정)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확인 소홀

- 매 분기별 주민등록 및 거주여부, 영농규모 면적, 농외소득,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적격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연도별	인원	지 원 금 액(원)			주민등록 및 거주여부 (감사일 현재)
		계	입학금	수업료	
계	26	21,781,600	133,900	21,647,700	
2014	7	6,152,700	38,700	6,114,000	여
2015	11	9,749,500	69,400	9,680,100	여
2016	8	5,879,400	25,800	5,853,600	여

○ 농업인 자녀학자금 착오 지급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sup>1)</sup>을 지원하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제외대상이나, 매 분기별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여 북하면 ◇◎◆ ○○○○ 김○○ 외 1명에게 1,358,100원을 착오 지급하는 결과 초래

## 10. 목욕비 및 아미용비 이용권 지급 소홀(주의)

- 대상자 배부실태 확인 : 전·출입자, 연령도래자, 사망자, 장기입원자
  - 2015~2016년 지급 대상자 859명 중 62명 600매 착오 지급
- 배부시 계획 미수립, 결과보고서 서명 및 날인 미확인

## 1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료 쓰레기봉투 지급 소홀(주의)

- 국민기초수급자 무료쓰레기봉투 배부 실태 확인
  - 장기입원(미거주)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지급 : 2014년 3명 99매  
2015년 9명 99매, 2016년 1명 36매

1)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 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아톰장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원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등

## 12.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소홀(주의)

- 수불 내역에 따른 수수료 수납 실태 확인 : 수수료 지연 수납처리 91건
  - 2014년 쓰레기봉투 8, 음식물쓰레기츨 6, 대형폐기물스티커 10건
  - 2015년 쓰레기봉투 11, 음식물쓰레기츨 8, 대형폐기물스티커 11건
  - 2016년 쓰레기봉투 8, 음식물쓰레기츨 7, 대형폐기물스티커 22건
- 쓰레기봉투 판매소 관리 확인
  - 판매소 7개소 중 2개소 대표자 변경 : 판매소 승계 신고서 미처리함.

## 13.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업무추진 소홀(주의)

- 장애인등록자중 사망자에 대한 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처리 확인
  - 2013. 10 ~ 2016. 6월 사망자 9명 : 미회수 9건

## 14. 면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및 운영 부적정(주의)

- 2014~2016년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동의를 받지 않고 공무원의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 2014~2016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미실시, 보안서약서 및 확약서 미징구

## 현 지 처 분

### 1.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각서 징구 소홀(시정)

- ◆●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외 1건

### 2.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검토 소홀(주의)

- ◇◎진입로 정비사업 외 5건

### 3. 수의계약 업무 소홀

- ★◇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등 4건

### 4.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소홀

- 2014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시 이해당사자인 해당위원 참석을 묵인하는 등 심의위원회 운영 소홀

### 5.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책임보험 가입관리 소홀(주의)

-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 19개소 가입(7개소 미가입)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보험가입 의무)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책임보험가입 의무사항 확인.

### 6. 의사무능력자(미약자) 급여관리 소홀(주의)

- 의사무능력자 2명이 ●◎◇◆ □★◇에 기거하고 있으나, 거주에 대한 사용료로 현금 영수증을 제출받고 있으나, 통장 현금인출 건에 대하여 증빙자료 미비 및 현금과다 인출, 사용내용 불명확
- ※ 주거유형에 따른 월세계약 체결이 필요함.

### 7. 아동급식 지원사업 업무추진 소홀(주의)

- 2015년 아동급식 지원대상자(17명) 12회 중 12회 지연 지원
- 2016년 아동급식 지원대상자(14명) 10회 중 8회 지연 지원

### 8. 인감 인송기간 미준수(주의)

-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관련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그 신고자 또는 말소자의 인감대장을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
- 인감이송기간 미준수 현황

구 분	이 송 현 황(단위:건)			비고
	계	3일 이내	3일 초과	
계	441	229	212	
2013년도	21	10	11	
2014년도	134	66	68	
2015년도	156	85	71	
2016년도	130	68	62	

### 9. 인증기용 증기수수료 세외수입 납입 소홀(주의)

- 증지 판매대금의 납입은 금고소재지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
- 인증기용증지 수수료 지연 납입 : 27건, 605,300원 (단위 : 건, 원)

지연주 일	년도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 5일		27	605,300	6	138,300	6	98,700	4	145,500	11	222,800

## 10.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부적정(시정)

○ 1명당 수수료 5,000원을 부과하여야 하나 1,500원만 부과

신청일자	신청인	발급사유	수수료	부과수수료	부적정 내용
'16.07.21	박○○	분 실	5,000원	1,500원	3,500원 미부과

## 1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소홀(주의)

○ 17세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신청기간임.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신청기간 잘못고지 현황 : 16명

연번	출생년월	인원	신청기간	발급통지일	비 고
계		16명			
1	'97. 3월	2	`14.05.01~`15.04.30	`14.04.15	신청기간 잘못고지
2	'97. 4월	4	`14.06.01~`15.05.31	`14.05. 9	
3	'97. 6월	3	`14.08.01~`15.07.31	`14.07.11	
4	'97. 7월	1	`14.09.01~`15.08.31	`14.08.06	
5	'97.10월	3	`14.12.01~`15.11.30	`14.11.07	
6	'98. 3월	2	`15.05.01~`16.04.30	`15.04.09	
7	'99. 1월	1	`16.03.01~`17.02.28	`16.02.01	

## 12. 지방세 제증명 발급 부적정(주의)

○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 서류 첨부없이 임의 발급

- 2013. 11 ~ 2016. 10. 현재 : 47건

# 2016년도 북하면 종합감사 목록

연번	구분	제 목	행정상		재정상(건/천원)			비고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b>계</b>		<b>26건</b>	<b>8</b>	<b>18</b>	<b>15/1,706</b>	<b>14/1,702.5</b>	<b>1/3.5</b>	
1	원 처 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2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2/100	2/100		
3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관리 부적정	○		3/0.5	3/0.5		
4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처리 부적정		○				
5		개발행위허가 불법행위 단속 소홀	○					
6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정산업무 소홀	○		7/244	7/244		
7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소홀		○				
8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사용폐지신고 처리 소홀		○				
9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업무 추진 미흡	○		2/1,358	2/1,358		
10		목욕비 및 이미용비 이용권 지급 소홀		○				
1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료 쓰레기봉투 지급 소홀		○				
12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소홀		○				
13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업무추진 소홀		○				
14		면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및 운영 부적절		○				
1	현 지 처 분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징구 소홀	○					
2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검토 소홀		○				
3		수의계약 업무 소홀	○					
4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책임보험가입 관리 소홀		○				
5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소홀		○				
6		의사 무능력자(미약자) 급여 관리 소홀		○				
7		아동급식 지원사업 업무 추진 소홀		○				
8		인감 이송기간 미준수		○				
9		인증기용증지 수수료 세외수입 납입 소홀		○				
10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 부과 부적정	○		1/3.5		1/3.5	
1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소홀		○				
12		지방세 제증명 발급 부적정		○				

# 처 분 지 시 서

NO. 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하면	2016	주 의			

## 제목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 위법·부당 내역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및 장성군 재무회계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북하면에서는 [표 1]과 같이 2014. 3. 11일 2월분 북하면 ●◎◇◆□ 전기사용료 등 총 14건 4,928천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1] 세출예산 부당 집행내역(2014. 3 ~ 2015. 12)

집행일	집행내역	금액	지적사항(통계목)	
			을	으로
계	14건	4,928		
2014. 3. 11	2월분 북하면 ●◎◇◆□ 전기요금 지급	91	2015.4.21. ◇◆·◇◆◎대 통합	
2014. 4. 3	3월분 북하면 ●◎◇◆□ 전기요금 지급	2	“	
2014. 3. 21	3월분 ●◎◇◆□ 상하수도 사용료	52	“	
2013. 12. 6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비품(유한락스 외 8종)구입	312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2013. 12. 6	사무실 내빈 □◇◆ 음료(커피믹스 외)구입	476	사무관리비	기관운영비
2013. 12. 23	◇◆● ◎★간담회 다과류 구입	112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2014. 6. 13	하천부유쓰레기 정화사업 물품(★◇)구입	45	기간제 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집행일	집행내역	금액	지적사항(통계목)	
			을	으로
2014. 4.25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물품(◎★◇◎) 구입	360	집행품의서와 지출결의서 통계목 상이	
2014. 6.20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물품(◎★◇◎) 구입	600	지급대상자 및 전달자 미기재	
2015.12. 1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물품(◎★◇◎)구입	250	집행품의서와 지출결의서 통계목 상이	
2015.12.30	4분기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225	품명 불분명하고, 전달자 없이 지출	
2015.12.31	4분기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90	“	
2015.12. 4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인건비 지급	2,000	면장 ◇◆없이 대상자 (9명) 임의 변경	
2015.12. 4	장애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지급	313	- 합의서 미징구 - 근무기록 부적정	

### [ 처분지시 ]

앞으로는 세출예산 집행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하면	2016	시 정	회 수	100,000	

## 제목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 위법·부당 내역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3호)』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①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 복구 종사자에 대한 격려금품 및 식사제공과 ②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③군부대 또는 경찰서 등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행사와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제공은 직무활동 범위로 정하여졌다. 또한 ④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 그런데도 북하면에서는 【표 1】과 같이 규정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원)

집행일	집행내역	금액	지적사항
2013. 11. 7	◆◎마을 김○○ 이장 자녀 결혼 축의금	50,000	집행 부적정
2015. 4. 22	□◇◆◎★ 심○○ 자녀 결혼 축의금	50,000	“
2014. 8. 4	◇◆◎ 하계 야유회 격려금 지급	100,000	“
2015. 3. 26	●◎★◇◆●◎□ 정기총회에 따른 격려금	100,000	중복 집행
2015. 3. 26	●◎★◇◆●◎□ 정기총회에 따른 화환전달	100,000	
2016. 2. 3	자매결연도시 홍보용 특산품 구입	490,000	지급대상자 미기재

## [ 처분지시 ]

① 규정과 다르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2건, 100,000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 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집행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3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하면	2016	시 정	회 수	570	

## 제목 :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관리 부적정

### [ 위법·부당 내역 ]

- 장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에 의거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으로 구분되며, 공공성이 있는 현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계좌이다.
- 또한, 같은 규칙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제5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 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자치단체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북하면에서는 ◎★◇◆□협동조합에 세입세출외현금계좌 등 9개 계좌와 ◎★◇◆□에 2개 계좌를 개설하였다. 따라서 세입세출외현금계좌와 지출원, 법인카드 결제 등 5개 계좌는 정상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 351-0073-9880-53(잔액 0원), 645117-51-020427(잔액 36원), 645117-270-100137(잔액 0원), 645117-270-100280(잔액 0원)과 ◎★◇◆□ 501536-01-000093(잔액 440원), 501536-01-000507(잔액 100원) 등 총 6개 계좌(잔액 570원)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다.

### [ 처분지시 ]

별도 개설하여 관리중인 6개 계좌에 대해 해지처리 및 잔액 570원에 대해 세입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4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하면	2016	주 의			

## **제목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처리 부적정**

### **[ 위법·부당 내역 ]**

- 북하면에서는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 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 농업인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농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신청자의 적격여부 심사와 농지의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 또한, 신청인이 제8조의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기한<sup>2)</sup>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미 발급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사유로는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가 아닌 토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 등이 있다.
- 2014. 2. 18일 광주광역시 ○구 ○○대로 000번길 00(000동 000호) 이 ○○이 북하면 ◇◆리 00번지(182㎡, 전)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같은 날 담당공무원은 자경의 농업에 이용하지 않으며 1960년대 말경부터 존치한 주택(70㎡) 이 있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하여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2)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일(법 제8조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토지여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발급을 반려코자 한다는 결과보고서(종이문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였으며 2. 19일 ‘동일번지내 주택존치’ 및 ‘원상복구 불가능’ 으로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 불가 통보(전자결재-문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됨)하였으며 2014. 3. 7일 이○○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다.

○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 통보시에는 ‘신청대상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경 또는 불법건축물이 있어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복구가 필요하여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이라고 명확히 작성해야 했어야 한다. 농지업무편람(2012. 12. p87)에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이나 ‘농작물경작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이라고 미 발급 사유를 애매모호하게 작성하면 등기소에서 농지가 아닌 걸로 판단하여 등기가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강조하였다.

○ 2. 19일 이○○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건에 대해 ‘동일번지내 주택존치’ 및 ‘원상복구 불가능’ 으로 미 발급 사유를 애매모호하게 통보함과 동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된 것이 소유권 이전된 직접적인 사유로 추정된다.

## [ 처분지시 ]

① 상기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여부를 장성등기소에 확인 결과 첨부되어 있지 않음을 회신 받음에 따라, 앞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 추진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자격증명 발급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 사유를 농지업무편람에 따라 명확히 명시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②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5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하면	2016	시 정			

## **제목 : 개발행위허가 불법행위 단속 소홀**

### **[ 위법·부당 내역 ]**

- 북하면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하여 당초 개발행위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제140조(벌칙) 규정에 따라 북하면에서는 위임 소관에 속하는 1,000㎡ 이내 토지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위법행위의 지도·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하면에서는 【표 1】과 같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하여 지도·단속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특히, 『북하면 ○○리 00 ○○』의 경우 단독주택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에 진출입로 약 287㎡를 무단 조성하고, 신청외 대지(A=126㎡)에도 약 26M의 석축쌓기를 하여 야영장으로 조성·운영하고 있다.
- 한편,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당초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코자 할 경우 농지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준공 및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등 위법행위의 지도·단속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개발행위허가 불법행위 현황

허가 (변경)일	위 치	허가면적	목 적	불법행위 위치·면적	불법행위 내용	비 고
2016.4.27	북하면 ○○리 00	995m <sup>2</sup>	단독주택 부지조성	①북하면 ○○리 산000-1 (287m <sup>2</sup> ) ②북하면 ○○리 00 (약26m)	①진입로 무단조성 ②신청외 대지면적 부지내 석축쌓기 ③농지용도 변경미승인	최○
2014.5.28	북하면 ○○리 000-1	660m <sup>2</sup>	농업창고 부지조성	-	준공기간 도과	이○○
2014.7.17	북하면 ○○리 000	660m <sup>2</sup>	농업창고 부지조성	-	준공기간 도과	유○○
2014.8.6	북하면 ○○리 000	990m <sup>2</sup>	단독주택 부지조성	-	준공기간 도과	최○○
2014.11.24	북하면 ○○리 00-0,000,000	6m <sup>2</sup>	전주설치	-	준공기간 도과	○○ ○○공사
2014.11.26	북하면 ○○리 000-1	347m <sup>2</sup>	꽃감건조장 부지조성	-	준공기간 도과	최○○
2015.1.30	북하면 ○○길 00-3	308m <sup>2</sup>	농업창고 부지조성	-	준공기간 도과	김○○
2015.2.13	북하면 ○○리 000-3, 000-6	205m <sup>2</sup>	단독주택 부지조성	-	준공기간 도과	조○○
2015.6.15	북하면 ○○리 000, 000-3	202m <sup>2</sup>	단독주택 부지조성	-	준공기간 도과	최○○
2015.9.18	북하면 ○○리 00-3, 00-4	320m <sup>2</sup>	단독주택 부지조성	-	준공기간 도과	○○ 테크
2015.9.30	북하면 ○○리 00, 00	491m <sup>2</sup>	단독주택 부지조성	-	준공기간 도과	방○○
2016.4.14	북하면 ○○리 000	598m <sup>2</sup>	주택부지 진입로조성	-	준공기간 도과	조○○

【 처분지시 】

앞으로는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시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6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하면	2016	시 정	회 수	244,030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정산업무 소홀**

### **[ 위법·부당 내역 ]**

- 북하면에서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2013 생활편익사업 ○○진입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각각 2013. 12. 3.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건설공사 경비분석 및 비목별 요율을 정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 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이에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규정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나, 동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 100 m<sup>2</sup>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 그러나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일로부터 70일, 건설공사 등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날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한편,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료는 사후정산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면 잔액부분은 회수 할 수 없으나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 그러나 북하면에서는 【표 1】과 같이 준공일 이후 보험가입 및 사업개시 신고서 및 별도 정산 조치하지 않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내역

사업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천원)	계약자	산정내역(원)			준공계 접수일	보험 가입 신고일
				산정액	납부액	정산 여부		
2013 생활편익사업 ○○진입로 정비사업	2013.10.29	1,818	(주)○○종합건설	12,085	-	부	2013.12.3	-
2013 생활편익사업 ○○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013.10.29	2,825	(주)○○종합건설	35,740	-	부	2013.12.3	-
2013 생활편익사업 ○○○옆 농로정비사업	2013.10.29	2,275	(주)○○종합건설	40,515	-	부	2013.12.3	-
2013 생활편익사업 ○○소하천 석축보수사업	2013.10.29	1,500	(주)○○종합건설	25,810	-	부	2013.12.3	-
○○경로당 개보수사업	2013.10.25	5,000	(주)○○○하우징	75,300	-	부	2013.11.25	
○○경로당 개보수사업	2014.4.30	1,500	(주)○○○하우징	9,954	-	부	2014.5.14	
○○여자 경로당 개보수사업	2013.10.25	3,000	(주)○○○하우징	44,646	-	부	2013.11.25	

**[ 처분지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244,03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7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하면	2016	주 의			

## 제목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소홀

### [ 위법·부당 내역 ]

- 북하면에서는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 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 농업인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농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신청자의 적격여부 심사와 농지의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신청자의 적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의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li> <li>-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li> </ul>
농지의 적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li> <li>- 농업경영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여부</li> <li>- 소유농지의 이용실태</li> <li>- 경작하려는 농작물 종류 등</li> </ul>

- 그런데도 북하면에서는 【표 1】 과 같이 2014~2016년 현재까지 625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하면서 자경의 농업에 이용할지의 여부, 농업경영계획서첨부 여부, 기존 농업인 여부 등의 항목에 대한 검토만을 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

**【표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단위 : 건수)

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625	247	199	179	

**[ 처분지시 ]**

앞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 추진시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8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하면	2016	주 의			

## **제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사용폐지신고 처리 소홀**

### **[ 위법·부당 내역 ]**

북하면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사용폐지신고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시 첨부서류 확인 소홀**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륜자동차신고필증,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북하면에서는 【표 1】 과 같이 2014. 12. 4일 북하면 ○○○길 00-1 이○○ 외 9명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를 처리하면서 이륜자동차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 **【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현황**

소 유 자		이륜자동차번호	사용폐지일	미첨부서류
성 명	주 소			
이○○	북하면 ○○안길 00-1	전남장성카0000	2014.12.04	이륜자동차 번호판
최○○	북하면 ○○1길 00-1	전남장성타0000	2015.05.20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김○○	북하면 ○○길 00-5	전남장성타0000	2015.06.23	
천○○	북하면 ○○1길 00	전남장성타0000	2015.07.03	
김○○	북하면 ○○○○길 00	전남장성카0000	2015.08.28	
이○○	북하면 ○○로 000	전남장성타0000	2015.10.29	
기○○	북하면 ○○길 00	전남장성타0000	2015.11.04	
이○○	북하면 ○○로 000-9	전남장성타0000	2015.11.17	
조○○	북하면 ○○○○길 00	전남장성타0000	2016.02.04	
이○○	북하면 ○○2길 00-9	전남장성카0000	2016.05.16	

## ② 문서의 접수 소홀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접수한 종이문서에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고 처리담당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4년에 접수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9건과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7건 접수하여 처리하면서 접수일시 및 접수등록번호 기재하지 않았으며 문서를 공람한 사실도 없다.

## [ 처분지시 ]

앞으로는 이륜자동차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9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하면	2016	시 정	회 수	1,358,100	

## 제목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업무 추진 미흡

### [ 위법·부당 내역 ]

북하면에서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교육 의욕 고취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확인 소홀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읍면장은 매 분기별 주민등록 및 거주여부, 영농규모 면적, 농외소득,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 그런데도 북하면에서는 【표 1】과 같이 2014~2016년도에 북하면 ○○3길 김○○ 외 25명에게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면서 매 분기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원한 사실이 있다.

#### 【표 1】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현황

연도별	인원	지 원 금 액(원)			주민등록 및 거주여부 (감사일 현재)
		계	입학금	수업료	
계	26	21,781,600	133,900	21,647,700	
2014	7	6,152,700	38,700	6,114,000	여
2015	11	9,749,500	69,400	9,680,100	여
2016	8	5,879,400	25,800	5,853,600	여

② 농업인 자녀학자금 착오 지급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sup>3)</sup>을 지원하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제외대상이나, 매 분기별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여 【표 2】와 같이 북하면 ○○로 0000 김○○ 외 1명에게 1,358,100원을 착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농업인 자녀학자금 착오 지급현황 ①

신청자(보호자)			수혜자(학생)		
주 소	성명		성명	생년월일	학교
북하면 ○○로 0000	김○○		김○○	00. 0. 0.	○○고등학교 (3학년)
농업인 자녀학자금(반납대상)			의용소방대 자녀학자금		
구분	지급일	지급액	구분	지급일	지급액
계		657,900	계		1,000,000
2016. 1분기	3. 15	219,300	1차	4. 20	500,000
2016. 2분기	6. 9	219,300	2차	9. 29	500,000
2016. 3분기	9. 2	219,300	담양소방서 방호구조과-14186(2016.10.13.)		

【표 2】 농업인 자녀학자금 착오 지급현황 ②

신청자(보호자)			수혜자(학생)		
주 소	성명		성명	생년월일	학교
북하면 ○○로 000	정○○		정○○	00.00.00.	○○○○○ 고등학교(2학년)
농업인 자녀학자금(반납대상)			의용소방대 자녀학자금		
구분	지급일	지급액	구분	지급일	지급액
계		700,200	계		1,000,000
2016. 1분기	3. 15	233,400	1차	8. 29	1,000,000
2016. 2분기	6. 9	233,400			
2016. 3분기	9. 2	233,400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인재육성팀-1600(2016.10.17.)		

3)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 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원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등

## **[ 처분지시 ]**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착오 지급한 1,358,1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10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하면	2016	주 의			

## **제목 : 목욕비 및 이·미용비 이용권 지급 소홀**

### **[ 위법·부당 내역 ]**

- 북하면에서는 의료복지혜택이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활기찬 노후생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고 있다.
-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제4조에 따르면 지원기준으로 65세 나이에 이르는 다음달부터 지급하고, 전입자가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달부터 지급하며, 연령도래자 및 전입자의 지원 사유 발생일과 이용권 지급 시기가 맞지 않아 이용권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북하면에서는 【표 1】과 같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용권 지급대상중 전입자 및 연령도래자 3명에 대하여는 전입 익월달에 12매를 착오 지급하였고, 지급제외 시설입소자 51명에게 459매를 지급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중 장기입원자 8명에게 129매를 부당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1】 목욕비 및 이·미용비 이용권 부당 지급 현황** (단위 : 명, 매)

구 분	연 도 별	인 원	수 량	비 고
전입자 및 연령도래자	소계	3	12	
	2015	2	6	
	2016	1	6	
시 설 입소자	소계	51	459	
	2016	51	459	
장 기 입원자	소계	8	129	
	2015	4	66	
	2016	4	63	

## **[ 처분지시 ]**

앞으로는 목욕비 및 이·미용권 지급시 관련규정에 따른 지급시기 및 대상을 명확히 준수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1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하면	2016	주 의			

## **제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료 쓰레기봉투 지급 소홀**

### **[ 위법·부당 내역 ]**

-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28조에 의거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1인당 매월 60리터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 이에 쓰레기봉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수급자에게 쓰레기 봉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거주 수급자에게는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하면에서는 201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기입원(미거주) 수급자 11명에게 쓰레기봉투 234매를 지급하는 등 쓰레기 봉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장기입원(미거주) 수급자 무료 쓰레기봉투 지급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원기간	봉투지급기간	지급수량
1	최○○	23.06.20	2015.9~2016.8	2015.10~2015.12	9매
2	강○○	24.06.18	2014.1~2015.6	2014.1~2014.6	18매
3	김○○	28.09.02	2014.9~2016.8	2015.4~2016.6	63매
4	김○○	29.09.06	2015.2~2015.6	2015.4~2015.6	9매
5	이○○	24.10.24	2014.7~2016.8	2014.7~2015.6	18매

○ 장기입원(미거주) 수급자 무료 쓰레기봉투 지급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원기간	봉투지급기간	지급수량
6	김○○	39.07.10	2014.1~2016.8	2014.1~2016.6	72매
7	하○○	48.03.05	2014.1~2016.8	2015.4~2015.6	9매
8	김○○	55.03.29	2014.7~2016.7	2015.10~2015.12	9매
9	한○○	59.05.16	2014.1~2016.8	2015.10~2015.12	9매
10	조○○	66.01.02	2014.1~2016.7	2015.10~2015.12	9매
11	윤○○	68.03.14	2014.2~2016.8	2015.10~2015.12	9매

**[ 처분지시 ]**

앞으로는 무료 쓰레기봉투 지급시 거주여부 등을 확인 후 지급하시기  
바라며,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1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하면	2016	주 의			

## **제목 :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소홀**

### **[ 위법·부당 내역 ]**

-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26조에 따르면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는 배출자가 읍면사무소에서 스티카 구입시 수수료를 납부하고,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카를 읍·면사무소에서 매수해야 하며, 읍·면장은 주문에 의해 쓰레기처리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부하여 붙임토록 조치하고 납부 영수증을 확인 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북하면에서는 【표 1】과 같이 2014~2016년 9월까지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짚, 대형폐기물 스티카 반출시 수수료 납입 후 교부하여야 하나 납부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표 1】 쓰레기처리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지연납현황**

종별	연도별	수납건수	지연건수	지연일수
계		280	91	
쓰레기봉투	2014	29	8	1일~42일
	2015	34	11	1일~10일
	2016	28	8	1일~19일

종별	연도별	수납건수	지연건수	지연일수
음식물쓰레기철	2014	20	6	1일~4일
	2015	12	8	1일~38일
	2016	16	7	1일~19일
대형폐기물스티카	2014	31	10	1일~5일
	2015	53	11	1일~38일
	2016	57	22	1일~19일

### [ 처분지시 ]

앞으로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배부시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확인 후 배부하시기 바라며,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13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하면	2016	주 의			

## **제목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업무추진 소홀**

### **[ 위법·부당 내역 ]**

- 『장애인복지사업 안내(1)』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자 중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회수하여 폐기해야 하며,
- 장애인등록 취소 또는 장애등급 변경등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일 2주전까지 장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북하면에서는 【표 1】 과 같이 등록 장애인 중 사망자에 대하여 실제 사망일의 다음날로 장애등록을 취소하고 부당 사용이 없도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회수 후 폐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않는 등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장애인 사망자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현황**

연도별	장애인 사망자 수	회수 및 폐기	미 회수	비고
계	9	-	9	
2014	4	-	4	
2015	2	-	2	
2016	3	-	3	

## **[ 처분지시 ]**

앞으로는 장애인등록증 업무 추진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14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하면	2016	주 의			

## **제목 : 면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및 운영 부적절**

### **[ 현 황 ]**

- 북하면은 경비업 및 전기통신사업 등으로 등록된 업체와 1년간 청사 경비용역을 체결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4대와 지문인식기 2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 위법·부당 내역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같은 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에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북하면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사 출입을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지문인식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하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무원의 지문과 주민등록을 수집한 사실이 있다.
- 또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는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열람하는 용역으로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용역 계약시에는 계약서에 용역사업 참가직원의 보안 준수사항과 수행단계에서 참여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토록 하며, 비밀유지의 준수 의무 및 위반할 경우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료단계에서는 용역사업 관련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보안확약서를 작성·제출토록 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하면에서는 2014~2016년까지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용역수행이 이루어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 처분지시 ]**

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절차 등을 이행하여 주시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